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의 경향 — 판례요지의 쟁점별 정리를 중심으로 —

李 興 在*

I. 머리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1호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그 범위에 관하여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가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또한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장 제3절은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이라는 표제하에 제32조에서 제39조에 걸쳐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및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산재보험법이 개정(81.12.17)되기 이전에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업무상재해의 인정요건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명문화하고 있었지만 현행법이 종전의 두 요건을 의식적으로 삭제하여 단순히 ‘업무상의 사유’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을 들어 ‘업무상’의 개념을 융통성있게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 견해이다.

이처럼 산재보험 수급요건의 핵심개념인 업무상 재해의 해석과 그 인정기준의 확립은 근로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우리의 산업현장에서 피해 근로자의 산재보험수급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법리적 측면이나 실제적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규정을 실제 적용하는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그 현실적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은 관련 판례에 대한 본격적 논평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주요 판례의 요지를 각 쟁점별로 정리하여 그 경향을 살펴 봄으로써 판례법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법리의 올바른 모색을 하기 위한 전제작업을 하는 데에 그 기본 목적을 두고 있

*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副教授

다. 연구의 대상과 범위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90년부터 99년 상반기까지의 주요판례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인 판례경향의 검토를 하기 전에 먼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판례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97.9.5. 97누7011)라고 해석하여 기본적으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가지 요건을 요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93.1.19. 92누13073)고 하면서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즉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본다(99.1.26, 98두10103).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인정기준으로 판례는 근로자의 행위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을 것을 일관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재해를 입은 경우이어야 한다(99.4.9. 99두189, 96.8.23. 95누14633).

다음에서는 이러한 판례의 기본 입장이 업무상 재해의 각 쟁점별로, 즉 업무상 사고, 통근재해, 출장중 재해, 과로사, 직업병 등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그 경향을 판례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논평하고자 한다.

II. 업무상 사고

1. 작업시간중의 사고

사업장 내에서 취업시간중에 사고가 난 경우는 전형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 업무준비중의 사고

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의 피용인이 하도급계약 개시일 전

날 밤에 그 다음날부터의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행위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96.10.11. 96누9034).

(2) 쟁의단계에서의 노조활동중 사고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97.6.10. 96누13866, 96.6.28. 96다12733, 94.2.22. 92누14502)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위 결의대회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98.12.8. 98두14006, 97.3.28. 96누16179).

(3) 노조전임자의 노조업무수행중 재해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 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96.6.28. 96다12733, 94.2.22. 92누14502).

(4) 사적인 불일중의 재해

장거리 승객운송을 위한 택시운전자 및 교대운전자로 탑승한 자가 승객의 양해아래 사적인 일을 좀 볼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있어 이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91.11.8. 91누3314).

(5) 복합원인 또는 원인경합에 의한 재해

근로자가 평소 누적된 과로와 연휴동안의 과도한 음주 및 흡한기의 노천 작업에 따른 고통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다.(1990. 2. 13. 89누6990)

측두엽성 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증상의 발현과 타워크레인의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99.1.26. 98두10103)

2. 작업시간 외의 사고

사업장내에서 취업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 휴게시간중 사고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휴게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고, 회사가 주최한 것도 아니며, 축구장 시설에 하자가 없으므로, 회사가 관리하는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96.8.23. 95누14633).

(2) 사업주의 승낙없이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의 2층 다락에 사다리와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발각되어 그 작업을 중지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가 그 작업을 계속하다가 다락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94.8.23. 94누3841).

(3) 퇴근 후 연락을 받고 동일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근 후 위 사업장의 근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장의 견인차를 운행하여 고장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하였다(99.4.9. 99두189).

3. 행사나 모임중의 사고

사업장 밖에서 취업시간 외에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1)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가 인정기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92.10.9. 92누11107, 95.5.26. 94다60509, 97.5.23. 96누18748, 97.8.29. 97누7271, 97.9.26. 97다4494 등)

(2)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가) 정기적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에 참가한 후 귀가 도중의 교통사고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97.8.29. 97누7271).

(나) 은행 대리가 상급자의 요청으로 고객 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식사 후 고객의 제의로 당구장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예금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환계 대리가 은행 차장의 요청으로 고객 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식사 후 고객의 제의로 당구장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망인의 상관으로서 예금 유치와 고객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지점의 차장이 거액의 예금을 하고 있으며 추가로 그 이상의 예금을 하려는 고객을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면서 망인에게 그 고객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같이 참석할 것을 요청하여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면 이는 예금 유치와 고객 관리가 주된 업무인 차장의 업무 수행에 관한 접대행위일 뿐 아니라, 망인으로서도 위 차장을 도와 그와 함께 고객을 접대하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고객의 제의에 따라 식사 후 당구를 치기로 하면서 당구를 칠 줄 모르는 망인도 같이 가기로 하였다면 당구장에 가는 것도 고객을 접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사고 당시 망인이 업무 수행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98.1.20, 97다39087).

(3)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사례

(가) 기숙사의 직원 친목 야유회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재해

사안의 야유회는 회사의 직원들 중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사람들만이 자기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스스로 비용을 각출하여 마련한 행사로서, 그 참가자격도 원칙적

으로 기숙사 숙식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그 참가가 강제된 바 없고 위 망인도 자의로 이에 참가한 점, 회사가 그 경비를 제공한다거나 인솔자를 보내어 참가자들을 통제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 소유의 통근버스가 참가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92.10.9. 92누11107).

(나) 경영자 가족간의 친목 모임에 희망하는 일부 종업원들만 참가한 경우

사용자가 주말에 자신의 가족과 동종업체 경영자 가족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모임에 참가를 희망하는 일부 종업원들만을 참가시켜 놀러가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용자가 차량 및 비용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97.9.26. 97다4494).

(다) 노조전임자가 근무시간 종료 후 노조 개최의 체육대회에서 부상당한 경우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근로자가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단결과시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에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부상은 노동조합업무의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97. 3. 28. 96누16179).

(라) 담당주임의 지시로 동료사원의 이삿짐 운반을 돕다가 부상당한 경우

회사의 직책별 업무분장과 취업규칙상으로 동료사원의 이삿짐을 운반하거나 이를 돕는 것이 회사 업무에 속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그 밖에 회사가 그에 필요한 경비나 차량·장비 등을 제공한 바도 없는 데다가 이삿짐 운반을 지시하였다는 상사의 직위가 주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담당주임의 지시에 따라 동료사원의 이삿짐 운반을 돕는 것이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의 범주 내에 속하거나 달리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사원이 부상을 당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97. 5. 23. 96누18748).

4. 타인의 폭력으로 인한 사고

(1) 위협의 현실화로서의 업무기인성이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협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95.1.24. 94누8587 등)

(2) 운전기사의 자의적인 도발에 의해 촉발된 정비기사의 폭행으로 인한 부상

운전기사인 원고가 차량의 정비문제로 정비기사와 시비도중 정비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안에서 원고의 정비요구는 원고의 운전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정비요구를 둘러싸고 행한 욕설이나 폭력행사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 부수적인 의미에서도 원고의 업무행위라 볼 수 없고, 원고가 입은 상해는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정비기사의 폭행으로 인한 것일 뿐이며 위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라고 볼 수 없다. (95.1.24. 94누8587)

Ⅲ. 통근재해

1. 사용자의 통근과정에 대한 지배 관리성이 인정기준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96.2.9. 95누16769 등)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위 사고 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96.4.26. 96누2026).

2. 사적인 교통수단에 의한 통근

(1)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가) 일반근로자와 출퇴근 시간이 다른 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이 일반근로자와 출퇴근 시간이 달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였고 업무수행시에도 이를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그 연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3.9.14. 93누5970).

(나) 통근버스를 놓쳐 택시를 타러 가던 중의 사고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만으로는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4.4.12. 93누24186).

(다) 업무상 불가피하여 시내버스로 일찍 출근한 경우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다시 하차하여 걸어서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93.5.11. 92누16805).

(2) 회사가 일정한 보조를 하는 차량으로 통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가) 회사가 차량의 유류를 보조한 경우

회사원이 출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그 차량의 유류를 보조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위 회사원에게 속하여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 위 회사원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사원이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97.11.14. 97누13009)

(나)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한 경우

퇴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그 차량이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고,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입은 재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95.9.15. 95누6946)

(3) 전근명령으로 인한 신임지 부임중 발생한 재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 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위 사업주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하면 사업주가 그 차량을 회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96.9.20. 96누8666, 97.10.10. 97누10376)

3. 회사차량을 개인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 경우

(1) 회사차량의 주차 및 출퇴근 이용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회사소속의 트럭에 과자류제품을 싣고 소매점에 판매, 대금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과전후에 이 차량으로 출퇴근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 주차시켜 놓고 차량내의 재고품을 보관하여 왔는데, 영업소 동료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이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고속도로상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뇌좌상을 입었다. 영업소의 창고 사정상 또는 업무의 편의를 위한 영업방침상 일과 후에도 재고품을 차량의 적재함에 보관하였고 원고 자신의 책임하에 차량을 주차시켜 재고품을 보관하는 것이 업무상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사업주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을 지시하거나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통근용 교통수단으로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용한 원고의 통근과정이 위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96.2.9. 95누16769).

(2) 운전면허 없이 회사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 경우

중기 작업시간 이후에 병이 갑 회사로부터 아무런 지시가 없었고, 운전면허도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갑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의 인부들과 함께 목욕을 한 후 현장숙소로 돌아왔다가 다시 병 개인의 숙소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이를 을 회사를 갈음한 갑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거나, 갑 회사에 의하여 제공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의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병이 현장 작업반장 등의 지시에 의하여 그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 인부들의 공사현장과 식당 사이의 출·퇴근을 하도록 하여 주고, 병 자신의 출·퇴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병의 편의적 행위로서 자의적 또는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94.10.25. 94누9498).

(3) 교대근무자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의 교통사고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 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것이 위 택시 회사가 묵시적으로 이

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위 회사의 피용자들의 노동력 제공에는 위 차량을 이용한 퇴근이 필연적인 사실에 비추어 위 퇴근하던 운전사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92.1.21. 90다카25499).

4. 업무상의 원인(과로)과 통근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정

근로자가 직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통상근무를 한 데 이어 그 다음날 02:30경까지 계속된 시간외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퇴근하던 중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 마주 오던 덤프 트럭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다면, 이는 근로자가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중앙선 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근로자의 부상은 그 업무 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위 근로자의 업무와 위 사고로 인한 부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92.2.14. 91누6283).

IV. 출장중 재해

출장은 사업장 밖에서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통상의 업무수행과 다른 점이다.

1. 사용자의 출장과정에 대한 지배성이 인정기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 불성(成, 不成)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98.5.29. 98두 2973, 93.11.9. 93다23107 등).

2.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1) 실습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

소외 회사 사원으로 채용된 후 수습기간 중에 기초교육계획일정에 따라 현장견학 및 실습교육을 받기 위하여 무역부장의 인솔아래 회사에서 제공한 승용차편으로 진주시로 가던 중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전복, 연소되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 현장견학과 실습을 받기 위하여 그 실습현장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그 현장견학과 실습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므로 이는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 그 이동 중에 발생한 위 사고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93.11.9. 93다23107).

(2) 회사사장 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해 관할 경찰서로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회사 직원들이 사장이 일으킨 회사 소속 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하여 회사 소유의 차량에 타고 사고 관할경찰서로 가는 행위는 업무의 수행 내지는 그 연장이고, 이와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 대표이사가 일으킨 회사차량의 교통사고의 처리라 함은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적 책임의 처리뿐만 아니라 회사 소유차량의 사고로 인한 회사의 민사적 책임의 처리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93.11.9. 93다25851).

(3) 조합간부가 결혼축의금 전달을 위해 운전하던 중의 재해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고 조합장을 동승시킨 채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2일 후 거행될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다가 차량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차량운행 승인을 받은 것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위 사고가 결혼식 2일전에 결혼장으로 가는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더라도 위 망인은 회사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91.4.9. 90누10483).

(4) 출장중 과음 후 숙소에서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출장중 과음 후 지정된 숙소에서 자다가 물을 마시거나 용변을 보는 등의 목적으로 일어나 다니던 도중에 숙소의 벽이나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 그가 피곤한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많이 취하기는 하였지만 술을 마신 동기와 그 장소, 마신 시간과 그 양, 같이 마신 일행의 구성 등에 비추어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순전히

사적인 행위나 자의적인 행위로 볼 것은 아니고, 또한 그가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된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가 호텔 객실의 바닥이나 벽 등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된 것으로 추단되고, 그로 인하여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그의 사망은 출장업무의 수행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97.9.26. 97누8892).

3.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사례

(1) 업무와 관계없이 여자를 태우고 놀러다니다 발생한 교통사고

출장중에 입은 재해이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여자들을 태우고 놀러다니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입은 것으로서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2.11.24. 92누11046).

(2) 근무시간중 직장 상사의 문상을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

(한국조폐공사 조직관리과 부참사직에 있던 망인이) 직장의 상사나 애경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중에 직장 상사의 문상을 갔다 하더라도, 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부조하기 위한 사적, 의례적 행위이지, 이를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위 문상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93.10.12. 93누14806).

(3) 저녁식사 후 택시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고 도로횡단중 발생한 교통사고

근로자가 출장 중 밤늦게 일을 마치고 부근에서 동료들과 함께 자정이 지날 때까지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신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포장마차에서 술을 더 마시고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동료들보다 약 5m 쳐져서 뒤늦게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원고가 밤늦게 일을 마치고 부근에서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것까지는 출장과정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한 때로부터 숙소로 복귀하기 이전까지의 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고, 이는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98.5.29. 98두2973).

V. 과로사

1. 과로사의 의의와 일반적 인정기준

재해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만성간질환이 있던 영업사원이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기존질병인 간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는 데다가, 사망할 무렵 본사의 영업실적의 평가에 대한 정신적 부담 및 육체적 과로가 가중되어 위 증세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나오던 중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다가 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91.10.22. 91누4751).

2. 업무기인성의 판단

(1)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97.5.28. 97누10, 96.9.6. 96누6103 등 다수)

(2) 과로 이외에 재해발생에 영향을 끼친 원인(음주등의 요인)과의 관계

(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망인은 평소 심관상동맥경화증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다가 업무상의 과로가 누적되어 그것이 유인이 되어 급사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순리에 합당하다 하겠고, 사고 전날 음주를 하여 그것이 다소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업무상의 과로로 인한 사망임을 좌우할 만한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92.11.26. 92구6176).

입사 전에 비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재직중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에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로와 업무상 잦은 음주가 기존질병인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간암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98.12.8, 98두12642).

(나)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사례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가 간경화를 유발시키거나 또는 위 간경화를 자연적인 진행정도보다 더 빨리 악화시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 오히려 1992년 건강진단에서 간질환관계의 정상판정을 받은 이후 위 망인이 건강에 조심함이 없이 다시 과도하게 음주를 계속함으로써 완치되지 아니하였던 위 알코올성간질환이 계속 진행되어 간경변으로까지 악화되었고 급기야는 이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95.3.21. 94구3683).

3.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과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질병은 뇌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 과로사 인정사례 중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1) 뇌혈관계 질환

(가)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아파트 공사장의 시멘트믹서공이 일주일 전부터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을 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93.2.12. 92누16553).

(나) 고혈압 증세를 가진 자가 계속 과로한 경우

운전 및 영업직을 겸임하는 사원이 원래는 건강하였으나 격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로 고혈압 증세를 가지게 되고 계속되는 과로로 뇌경색증이 발병된 경우 이는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92.4.14. 91누10015).

고혈압 증세가 있던 근로자가 직장을 옮긴 후 철선재료 건조작업을 함에 있어 환기 시설이 없고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이 불규칙하며 2교대 근무로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을 하게 되는 데다가 월 2회의 철야작업과 월 2회의 일요일 근무를 하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그 증세가 악화되어 허혈성 뇌졸증이 발생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91.4.12. 91누476).

(2) 심장질환

(가) 휴일 및 연장근무를 반복하던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일요일에도 자주 출근하여 작업상황을 점검하였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장근무를 하여 온 직물공장의 근로자가 제품 출고를 위하여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현기증,

두통, 얼굴 변색 등의 증상이 나타나 휴식을 취하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심한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관상동맥경화증의 악화 또는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96.9.10. 96누6806).

(나) 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로 피로가 축적되어 급성심장사 한 경우

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로 축적된 피로가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 과로원인이 될 수 있다면, 망인에게 근무 외에 과로원인이 될만한 다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로부터 온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92.9.10. 91누5433).

(다) 버스운전사가 평소 누적된 과로로 인해 운전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버스운전사가 1일 16시간 30분씩 3일을 연속 근무하고 1일을 휴무한 뒤 다시 출근하여 버스를 운전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평소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을 요하는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데 그 원인이 있다(90.11.13 90누3690).

(3) 간염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일상적으로 음주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간염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경우에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된 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 노무담당 팀장으로서 또 업무과장으로서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다한 음주를 한 탓으로 간염이 자연적인 악화의 정도를 넘어서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97.5.28. 97누10).

4.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업무와 과로사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중 다수는 현대의학상 그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고, 특히 과로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의 경우(폐암, 위암, Berger병 등)가 많다. 즉 일반적으로 막연히 과로가 만병의 근원이라든가 과로가 신체의 저항력을 약화시켜 모든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정도를 가지고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 현대의학상 그 원인 및 과로와의 관련이 입증되지 않은 질병

(가) 위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한국방송공사 소속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중 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 사망은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과로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98.5.22. 98두4740).

(나) 버거씨병

버거씨병은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버거씨병이 과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폐질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93.4.23. 92누8545).

(다) 급성골수성 백혈병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현대 의학상 확실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다만 바이러스에의 감염, 방사선이나 화학약품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 등이 유인으로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으면 백혈병의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거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폐렴이나 장출혈 등의 합병증이 유발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그의 기존 질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급격히 악화되고 이에 따른 합병증이 유발되어 망인의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의 스트레스와 과로가 기존의 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의 백혈병 발병이나 그 악화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1997. 8. 29. 95재누91).

(2) 청장년급사증후군

(가) 사인이 불분명하고 단순한 경비업무인 경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때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중 사망한 경우, 달리 망인이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 그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가사 사인이 심장마비라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인 경비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98.12.8. 98두13287).

(나) 사인이 불분명하고 과로로 볼 증거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 열처리반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야간근무를 마친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하고 평소의 업무내용이 신체적으로 크게 힘든 것도 아니며 위 근로자가 당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위 근로자가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하였더라도 그것이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98.4.24. 98두3303).

(다) 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1주일 단위의 주야간 교대근무를 과로로 볼 수 없는 경우

망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특별한 병력이나 질환이 없었으며, 특히 1996년 하반기 이후 자동차 생산량 감소에 따라 업무량이 줄어들었고, 사망 1개월 전에는 장기과업으로 작업에 임하지 않았으며, 사고 직전 설날 연휴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위 망인이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일반적인 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피로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위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98.9.11. 98두9257).

VI. 직업병

1. 업무기인성 입증의 방법 및 정도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

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98.5.22, 98두4740)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97.9.5. 97누7011, 92.6.9. 91누13656).

2. 업무상 질병의 판단기준과 방법

(1) 여러 사업장을 거친 근로자의 업무상의 질병 판단기준

여러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92.5.12. 91누10466).

(2) 제2차 뇌경색의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방법

최초의 뇌경색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려 본 다음 만약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면 그 후에 발생한 제2차 뇌경색이 최초의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에 나아가 심리하여 보아야 한다(96.1.26. 95누14282).

3.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1) 크롬도료의 과량폭로로 인한 폐암

당초 회사의 도장공으로 채용될 때나 그 이후에 별다른 질병이 없던 위 망인이 약 15년 동안 에어 스프레이를 이용한 도장작업으로 페인트 분진, 특히 일부 작업 과정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다량 비산되는 작업장에서 그 대부분의 시간을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열악한 상태에서 작업하여 오다가 크롬도료에의 과량폭로가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폐암에 걸리게 되었다면, 비록 위 근로자가 폐암의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작업환경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 폐암에 이르렀거나 그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96.2.13. 95누12774).

(2) 벤젠 사용으로 인한 급성골수성 백혈병

평소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 등 발암화학물질에 때때로 노출되었고, 사용자의 지시로 2개월 정도의 공장 도색작업을 하면서 작업 후 옷과 피부에 묻은 페인트를 세척하기 위해 자신이 수불, 관리하는 벤젠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발병 1주일여 만에 사망한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그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이 그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그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97.2.28. 96누14883).

(3) 제판실 근무 중 발병한 기관지천식

원고가 제판실에서 약 13년간 근무하던 중 기관지천식이 발병하였는바,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크롬가스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기관지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는 위 제판실에서의 근무시작 당시 기관지천식의 증세가 없었는데, 제판실에 근무하던 동안 후에는 그 증세가 감소되었다는 것이라면 비록 기관지천식이 크롬가스 등 외에도 수많은 물질들에 의하여서도 유발될 수 있고, 원고의 기관지천식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기관지천식을 유발하는 다른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엿볼 수 없다면 원고의 위 기관지천식은 위 회사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크롬가스 등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질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92.5.12. 91누10022).

(4) 발병원인물질에 폭로된 이후에 발병한 경우

위 망인의 고혈압, 관상동맥경화증 및 사구체경화증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인의 고혈압 등은 위 회사(원진레이온주식회사) 근무당시 원액 2과에서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발생된 증상이라고 추단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인은 위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한 고혈압이 악화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93.10.12. 93누9408).

(5) 택시운행으로 발생한 유해가스에 의한 두통증세 등

위 증상은 원고 뿐만 아니라 위 택시를 교대로 운전하던 소의 근로자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점, LP 가스에는 원래의 성분 이외에도 불순물이 섞여 있어 그 불순물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도 위 택시에 스며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P 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그 성질상 위 두통 등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져 있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위 두통 등 증상은 위 택시의 운행으로 발생한 유해가스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94.8.26. 94누2633).

(6)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로 자살한 경우

위 망인은 1990년 무렵부터는 증상이 극도로 악화되어 항상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게 되었고, 화장실도 휠체어를 타고 부축을 받으며 다녀야 하고, 침대에 오르내리기도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으며, 사망하기 보름전부터는 대변을 전혀 보지 못하고 고통이 극에 달하여 머리를 침대모서리, 벽 등에 들이받기도 하였으며, 자꾸 불안해하고 괴성을 지르며 갑자기 산소호흡기를 빼버리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취하였고, 위 망인의 사망당시 병증으로 보아 생명의 연장은 가능하였는지언정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상태로의 회복가능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망인의 사망이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인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93.10.22. 93누13797).

(7)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소외 근로자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광부로 일하면서 얻게된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힘들게 근무하던 중 사망 1년 2개월전 무렵 작업중 괴탄에 맞아 입은 추간판탈출증등으로 1년 이상 계속 여러병원을 거치며 병상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위 업무상의 질병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심신의 기능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척추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대기중 더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94.5.24. 94누3056).

4.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사례

(1) 갑상선암의 청소원이 허리부상으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갑상선암이 제11흉추에 전이되어 있던 청소원이 쓰레기 뭉치를 청소차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 부상을 입었고 그 치료과정에서 ‘갑상선암, 부정맥, 심부전증’으로 사망

한 경우, 골절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악화되었다거나 작업환경이 갑상선암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97.9.5. 97누7011).

(2)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 발생한 추가질병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동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덕성염직공업사에서 염색공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 작업장내에서 작업중 무게 약800킬로그램의 원단말대가 떨어져 양다리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양대퇴 후면부 근육내 출혈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추가로 만성중이염, 진주종 및 우측외이도 협착증 등의 질병이 발견된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추가질병도 업무상 재해인 판시 부상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판시 부상과 위 추가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91.11.12. 91누5624).

(3) 중금속 등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희귀질병의 발병 내지 악화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한 질병으로서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막연히 납이나 알루미늄의 중독과 같은 환경적 손상이 이차적 발병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러한 환경적 손상에 의한 다른 일반적 증세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그 질병이 이례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 아닌 경우에게까지 곧바로 중금속 등에 노출되는 업무와 그 희귀 질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는 없으므로 전선제조업체의 생산직 근로자에게 발병한 운동신경원 질환(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99.1.26. 98두15757, 98.5.22. 98두4740, 93.4.23. 92누8545).

VII. 맺음말 : 판례경향의 종합평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의 기본입장은 재해의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가지 요건을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재해의 성격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여 이른바 ‘돌발성 재해’인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성을, 그리고 ‘직업성 재해’인 업무상 질병(직업병) 및 과로사에 대하여는 업무기인성을 보다 더 중요한 제 일차적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판례는 업무상 사고

의 업무수행성 판단에 관한 일반적 논거로서 ‘사용자의 지배 관리성’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통근재해 및 출장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이 논거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직업병 및 과로사의 업무기인성 판단에 관하여 판례는 ‘상당한 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의 입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특히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특색을 보이고 있지만, 입증부담을 피재자에게 지우고 또한 현대 의학상 그 원인 및 과로와의 관련이 입증되지 않은 질병에 대하여는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기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첫째, 판례가 돌발성 재해에 관한 업무수행성 판단의 일반적 논거로 삼고 있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성’기준이 산재보험법의 목적과 성격에 얼마나 합당한 법원리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업무수행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 관리성을 강조하는 판례의 입장은 그 이면에 사용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는 과실책임주의 원리의 기초를 대전제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주지하다시피 산업재해 보상책임은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한 것이고 그 본질에 관하여 사용자의 위험책임을 논거로 한 손실전보설과 근로자의 생활보장책임을 논거로 한 생활보장설의 대립이 있었지만 지금은 생활보장설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므로 재해의 업무수행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성이나 위험책임을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용자의 피재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책임을 관점에서 그 인정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목적과 성격에 더욱 합치될 것이다. 따라서 재해발생이 사용자의 지배영역 밖이라 할지라도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내지는 업무상 밀접불가분의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 합당할 것이므로 판례의 입장인 ‘사용자의 지배 관리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업무상 불가피성’ 내지는 ‘업무상 밀접불가분성’으로 그 기준을 전환하는 것이 사회보장법원리의 구현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 통근재해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법리적 측면이나 현실적 측면에서 과연 구체적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판례는 통근재해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배 관리성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근버스 등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 결과 회사차량의 자신 집에서의 주차 및 출퇴근 이용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라든지 또는 회사가 차량구입비나 유지비 혹은 유류를 보조한 경우라도 통근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판례의 입장대로라면 사용자측이 통근버스 등을 제공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통근재해의 인정여부가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결과가 되며 또한 통상적으로 통근버스의 제공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보다는 그 제공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보호의 필요성

이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근재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평성이 결여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판례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공무원의 통근재해는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통근재해에 대하여 사회적 지위에 따른 이중기준의 차별적 적용을 하는 판례의 입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 나아가 통근은 업무상 밀접불가분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통근수단으로 대부분 통근버스가 아닌 개인 승용차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오늘의 사회현실을 직시한다면 판례의 경직된 입장은 변화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직업병과 과로사의 업무기인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일반적 기준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판례는 직업병에 대한 업무기인성 입증의 정도에 관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이면 족하다고 하지만, 그 입증의 부담은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측에 지우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직업병의 성격상 그 업무기인성을 입증하기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제 40조 및 별표 3)은 피해자측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그 권리구제를 쉽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이곳에 ‘예시된 질병’은 청구를 받은 보험가입자측에서 업무기인성을 부정하는 특별한 반증을 하지 않는 한 업무기인성이 추정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피해자측에 입증부담의 책임을 지우는 판례의 입장은 입증부담의 전환을 통하여 피해자측의 산재보험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사회법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과로사의 업무기인성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이 판례의 특징이지만, 사인이 불분명한 청장년급사증후군과 그 원인 및 과로와의 관련이 의학상 입증되지 않은 질병에 대하여는 업무기인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이 판례의 입장이다. 업무기인성의 판단은 판례가 제시하듯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른바 청장년급사증후군이나 의학상 원인이 입증되지 않은 질병에 대하여 곧바로 업무기인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상의 제반 사정을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여부가 그 기준이 되는 사회보장법적 판단을 최종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Résumé〉

Review of the Supreme Court's Test for Occupational Accident

Lee, Heung-Jae*

This Article attempts to clarify the initial determinant of the Supreme Court's test for occupational accident(OA) especially with respect to controversial issues, *i.e.*, occupational injuries, commuting injuries, injuries on business trips, death caused by excessively heavy burden, occupational illnesses, and to suggest alternative judicial test for OA to effectively guarantee worker's right to receive OA insurance benefits under rapidly changing industrial workplace-environment.

Through examining relevant the test for OA during 1990-1999 in the light of the statutory goal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FACIA), the author points out the coherent tendency of the test for OA as follows : In order to meet requirements for OA "resulting from employment" in the FACIA(Art. 4, 1.), it must be both "caused by duties" which means that the one case has a proper casual relationship with the worker's duties and occur "in the course of employment" which means that the worker is under the employer's control and management. The above formula could be more flexibly applied depending on the facts of each case ; in case of occupational injuries, its "occurring in the course of employment" might be initial determinant for OA and in case of occupational illnesses or death caused by excessively heavy burden, its "being caused by duties" should be decisive factor for OA.

The author analyzes that background-thinking of the test which makes "the employer's control and management" to be basic criteria of judging whether occupational injuries occur "in the course of employment" is originated from the principle of liability based on fault, and this kind of orientation of the test is contradicted to fundamental doctrine of liability without regard to negligence under FACIA. Therefore, he argues that the criteria of "the employer's control and management" should be replaced by new concept of "inevitability in

* Associate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suing employment” or “inseparableness from employment” according to legal principle of social security law. From perspective of the test, commuting injuries except when the employer’s business is engaged in during the commutation should not be recognized as OA, because commutation is beyond “the employer’s control and management. However, the author contends that commuting injuries by a reasonable route and means should be regarded as OA, because nowadays commutation is not only indispensable for pursuing employment in reality but also “inseparable from employment” in terms of new criteria. Futhermore he underscores that, contrary to the test, the employer should prove against occupational illnesses and in case of unclear cause of death on or near the job, the appropriate casual relationship with the duties should be judged not on the simple medical basis but on the legal basis considering need of protection in the light of spirit of social security law.